

「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 이유
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유효기간을 2025년 6월 30일로 연장(안 제11장)

3. 주요 토의 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없 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국토교통부예규 제000호

「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」 일부개정안

「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권 총칙 제11장 중 “2022년 6월 30일까지”를 “2025년 6월 30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장 유효기간</p> <p>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2년 6월 30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11장 유효기간</p> <p>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5년 6월 30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